



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

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

지원대상

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

활동 사업자

2023.12.31. 이전 개업, 1차 공고일('24.2.15) 기준

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 사업자

※ 휴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에 한해 지원대상 포함

매출 규모

공고일 기준 '22년 혹은 '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*이

0원 초과** ~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

*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

**매출액이 0원이거나 미신고 사업체 제외

※ '22~'23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*

*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

전기요금 계약종

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

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

업종 제한

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

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」은 지원 제외

※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중복지원 제한

1인이 다수 사업체(법인/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

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

지원금액

최대 20만원

지원유형

✔ 직접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

✔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

① 타인명의 :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,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

② 관리비 납부 : 집합건물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

③ 기타 자물납부 : 집합건물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,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

지원방식 및 제출서류

유형	온라인 입력	제출서류	지원방식
직접 계약자	신청자명, 생년월일,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명, 전력공급처, 전력계약고객번호 등	제출서류 없음	최대 20만원까지 차감 지원대상 선정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
	① 타인 명의	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(택1) - 전기요금 고지서 (지류, 모바일, 알림톡 등) -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- 계약정보 종합내역 -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최대 20만원까지 차감 신청자 계좌로 환급 ('23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고지서·납부서를 통해 납부가 확인된 전기요금)
비계약 사용자	신청자명, 생년월일,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명, 전기요금 납부기간, 입금계좌, 사업장소재지 등	관리사무소,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,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(택1) -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-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-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- 납부확인서, 영수증, 명세표,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·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최대 20만원까지 차감 신청자 계좌로 환급 ('23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고지서·납부서를 통해 납부가 확인된 전기요금)
	③ 기타자물 납부		

※ 비계약사용자 주의사항

- '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.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1건을 제출

- '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('23.1월~신청월)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*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일체를 제출

*20만원 미만일 경우, '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

-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

신청기간

2024.9.2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